

정 관

(2026. 4. 22. 개정)

학교법인 흥신학원

학교법인 흥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및 보건·복지·경영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흥신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화곡중학교
2. 화곡고등학교
3. 서울흥신고등학교 <개정 2025.12.17.>

제3조2(부설기관) <삭 제> <2025.12.17.>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70(내발산동)에 둔다.

<개정 2023.2.9.>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 대장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제12조의2(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 제>

제12조의3(위원회의 조직) <삭 제>

제12조의4(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 제>

제12조의5(회의) <삭 제>

제12조의6(위원회의 간사 등) <삭 제>

제12조의7(예산·결산의 공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영 제14조4항 및 5항에 의하여 경영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이사장 1인, 개방이사 2인 포함)
2. 감 사 2인(개방감사 1인 포함)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5년
2. 감 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해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정관 규정에 위반한 때

2.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한 때

3. 본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4.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제15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개방이사는 이사 정수의 4분의1로 하며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에 따라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화곡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2. 위원은 이사회 추천 2인, 화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1인, 화곡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1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법인으로 부터 임원의 추천요청을 받거나 기타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간사는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 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안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5조의5(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법인의 업무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상근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며, 이사의 임기 내에서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의2(추천감사)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3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와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2(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9.>

제26조의3(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제28조(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흥신사를 경영한다.

제2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흥신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63에 둔다.

<개정 2025.12.17.>

제30조(관리인) ①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2.1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법 제53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4.29.>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임용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 휴직의 사유 중 1호 내지 4호, 7호, 7호의2, 11호의 경우는 우선 이사장이 임용하고, 다음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⑤ 교원의 임용에 있어 본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제34조의2 <삭제>

제34조의3(기간제 교원) ① 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거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제1항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5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 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9.>
2.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5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5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5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35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휴직교원의 처우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의3(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1조의4(명예 퇴직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5(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1조의6(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7(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2.9., 2025.2.14.>

2.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서훈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9.>
4.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9.>
7.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9.>

제41조의8(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1조의9(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10(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본 정관 제41조의7(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2.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직 교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 요청이 있을 때

<신설 2025.2.14.>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14.>

제41조의11(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41조의12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1조의13(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삭제)

제42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삭제)

제46조(제척사유) (삭제)

제46조의2(위원의 기피 등) (삭제)

제46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삭제)

제4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선) (삭제)

제48조(징계의결) (삭제)

제49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삭제)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제5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51조(운영세칙) (삭제)

제 3 절 재 심 위 원 회

제3절 재심위원회 제52조 내지 제65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66조(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2.4.29., 2025.12.17.>

②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③ 삭제 <2022.4.29.>

제67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경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말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②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4.29.>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④ 법 제70조의4에 의거하여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2.4.29.>

제68조(복무) ①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② 사무직원의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5.2.14.>

제69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에 준하여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7.>

제70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9., 2025.12.17.>

제70조의2(사무직원의 정년) 당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70조의3(사무직원 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의4(특별승진) ① 사무직원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7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9.>

③ <삭 제> <개정 2025.12.17. 삭제 2026.4.22.>

제71조의2(행동강령의 목적)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9. 제목개정·전문개정 2025.12.17.]

제71조의3(향응·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편의,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4(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5(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장(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6.4.22.>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6(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또는 학교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원 및 교직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7(교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8(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에는 임원(감사 등), 소속 학교에는 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3. 그 밖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1조의9(세부사항의 위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정관에 따라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법인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73조(교장 등) ① 화곡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고,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4.29., 2025.2.14.>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화곡고등학교와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교무조직에 각각 부를 두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 교

제75조(교장 등) ① 화곡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4.29., 2025.2.14.>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77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29.>

제78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79조의2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이상 7명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의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2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83조의2(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8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

1. 학교 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7.><중전 8호는 10호로 이동 2025.12.17.>
9.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12.17.>
1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2.4.29.> <8호에서 이동 2025.12.17.>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84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22.4.29.>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4조의4(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 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4조의5(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4.29.>

제84조의6(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4조의7(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의8(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9.>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5조의2(소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의3(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직원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절 운영 경비 등

제86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6조의2(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6조의3(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8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1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8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8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

제90조(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제91조(위원장) (삭제)

제92조(위원의 의무) (삭제)

제93조(분쟁조정 신청) (삭제)

제94조(회의개최 등) (삭제)

제9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

제96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삭제)

제97조(간사) (삭제)

제9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삭제)

제99조(운영세칙) (삭제)

제 10 장 보 칙

제10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정 희 영	1919. 7.29.	4 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의 9
이 사	나 채 성	1938. 1.16.	4 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1의58
이 사	김 병 선	1939. 2. 5.	4 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88의19
이 사	김 경 수	1939. 8.28.	2 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35의8
이 사	김 인 수	1908. 5.28.	2 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2동 602의 5
감 사	안 상 전	1937.10. 3.	2 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의15
감 사	강 인 선	1936.10.15.	1 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226의1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화곡고등학교 8급(서기)1인, 기능직 10등급 1인, 화곡여자상업고등학교 9급(부서기)1인, 기능직(10등급) 2인은 퇴직, 전보, 승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연 감소 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되는 기능직 정원(수)를 고용원 정원(수)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설치 학교중 ‘화곡여자상업고등학교’를 ‘화곡여자정보산업
등학교’로 교명 변경은 199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변경사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중 화곡중학교의 8급(서기) 1명과, 화곡고등학교의
9등급(난방원) 1명, 화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9등급(기계원) 1명을 삭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
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
에 만료된다.

부 칙

① (설립자 교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화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설립자 교장의 정년은 2003. 2. 28까지로 한다.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5조의4 및 제20조의2에 임원추천 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 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6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6.8.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일 반 직 계	6
4급 (서기관)	1
5급 (사무관)	1
6급 (주 사)	1
9급 (서기보)	3

(별표 2) [개정 2022.4.29.]

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행정	시설	행정	시설	행정	시설
계	6		8		7	
소계	4	2	5	3	4	3
5급 (사무관)			1		1	
6급 (주 사)	1					
7급 (주사보)			2	1	1	1
8급 (서 기)	1	1				
9급 (서기보)	2	1	2	2	2	2